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 <신설 2022. 1. 14.>

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

임대사업자	[] 개인사업자	성명	생년월일
	[] 법인사업자	법인명(상호)	법인등록번호
	주소(법인인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)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
민간임대주택	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		
	임대차 계약기간		임대보증금(원)

보증대상 금액(원)	담보권 설정금액(a)	임대보증금(b)	주택가격의 60%(c)	보증대상금액(a+b-c)

동의자 (임차인)	성명	생년월일	연락처

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

1.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라 **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**해야 합니다.

2. 다만, 같은 법 제 49조제3항에 따라 **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**에는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여 **가입할 수 있으며**, **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**인 경우 **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** 있습니다.

 가.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
 나.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
 다.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
 라. **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**

3.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,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**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**합니다.

임차인 확인·동의 사항

1. 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했으며, 임대주택에 **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대항 요건(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)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까(예정 포함), 그러지 않을 경우 보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까?**	[] 예 [] 아니오
2. **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*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?** * 일부 가입 금액: (담보권 설정금액 + 임대보증금) − 주택가격의 60%	[] 예 [] 아니오 [] 미가입 동의(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)
3. 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**보증에 가입된 일부 금액만 보증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?**	[] 예 [] 아니오 [] 미가입 동의(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)

년 월 일

동의인(임차인)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